

기안용지

인문 기 문 서 번호 42-4	(전화번호)	신 문 기 문 서 번호 74호
제 의 기 간		
사 영 인 사	퇴계학부장	
보 조 기 관	회계과장 회계3계장	회계과장 회계계장 사무과장 법무과장 (회계과장)
기 안 제 의 자	정영로 K-16	주
성 수 감 세 목	주 관 참 조 회 계 세 계 장 일 부 변 경 계 획 공 고	71-418
제 1 안 내부결재		
1. 망우역은 회계구획관리 사업지구내 일부 회계 예정지를 전체 회계 계획 수립시에 조사 착수 등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 회계 예정지내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2. 회계구획관리 사업법에 의거 조망 등 제 4 조 제 2항에 의거 별첨 도면과 같이 변경 신청 조치하여 관계된 소유자의 응답 (14일)이 응하 고져 합니다		
3. 다 음 (변경 사항) 가) 망우지구		
1. 망우지구 제 135 구획내 면적은 559.86.00㎡ 인지의 회계지시 추경 착으로 6㎡ 계획도로상에 건축이 있으므로 도로가 차반기 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6㎡ 계획도로를 일부 변경이 불가리한 실정인		
나. 동지구 추가지역내 중화동 414번지 및 416-4 호 토지는 유류장 지목이 감(감)이나 규황이 예정된 여지 20.00㎡		

1969. 11. 10 승인

190mm x 268mm 배장지 4kg/m²
 조판량 (1,000,000여 인매)

88
3/1

감보할 등급 작업이 축소되어 부족한 화지면적을 인근 보육시설에서
충당하여야 함.

2. 공화동 32-1로 중년리산의 건물
일부가 가로 계획상 철거되고 잔여지산의 건물을 계속 사용키 위한
진점이 있어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함.

나. 영호지구

1. 공화동 27-24로지, 1필의 화지 면적
면적 부족면적 3명, 을 전리면적은 충당지점 되어 함.

2. 부가화동 25-1로지, 1필의 중년리산에
이동 시설이 현상 라인 화지로 시정 함으로 이동 현상을 의 시정
함.

3. 부가화동 12-3로 화지상의 현상 및
화지 면적 산정 착오를 시정 조치 되어 함.

제 2 안

이동 특별시 용모 제 2 호

화지 계획 변경 공고

영호 영호로지구 계획의 시정지나 일부리만

대하여 화지 계획을 변경하여 화지 면적의 시정법 제 47조 및

동계도로 추위에 대비 응급호를 부려 14일안 로지 의사 및
환자간의 응급에 응한다.

2. 로지 계획 변경 계획 라는 강지 의제정국 환자라에
비치라고 있음이다 끝.

1971. 4

서울특별시

제 2 안

수 신 신신리 참로 반신 시 장
제 목 문 보

강우 새로 로지 계획 변경 사정사유 귀하 의사 로지에
대하여 로지 계획을 변경하여 다음 응급호와 같이 응급호를
통보 합니다.

수신리 ; 별첨 로지 의사 목록 끝.

망우지구

31-8

82

45

특지 소위자 목록.

위 치	소 위 자	주 소
목록 259 260	최 박 최	목록 169
" 750-7	조 문 경	안암로 2가 132-15
" 750-8	신 박 북 남 근	갈매리 544
" 750-9	권 현 용 일 권 경 순	만리로 2가 291-45
	김 개 수 백	보문로 3-11
	정 회 조	목록 72-2
" 750-6		" 176
" 810-3	박 무 길	" 1306
" 869-3	한 번 희	" 300
" 858	조 충 익	" 1225
" 863	오 세 진	삼천가 11-132
" 866	이 희 성	3면동 22-2
" 868		신동 80
" 861	이 순 영	삼봉동 134-A
" 854	이 문 자	우천시 광양로 2가 9
" 864	김 의 수	마감동 511-4
" 894	김 경 차	"
" 87	김 화 춘	"
" 871	...	모진동 196-4

이 구 명

대 서울특별시청 부서

31-5

93

★ 姓名 何 様 加

明子 172-3	신 감 진	明子 1257
		47

보 고 서

201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11번지
 삼성생명빌딩 15층

1. 회사명	지주기업	주주번호	동명	지번
	망우지구	125.126	영복	259.860

2. 과목 **화재계획법경**

3. 요지 **화재피해예방책으로 계획도서에 간문이 기록되어 기록내용을 변경하려**

4. 사업현황

1. 인가번호 67. 1. 21 (경오제11호)
2. 계획도 68. 7. 15 (서울도 148호)
3. 착공도 68. 7. 14 (. 195호)
4. 준공검사
5. 화재예방

5. 현황

1. 공사여부 **공사완료**
2. 현 용(건물구.용수) 부류로 **2층**
3. 보습여부

6. 사건발생경위

3월 20일경 망우지구 125.126 구획부지 축척이 1:25 구획면적 259.860 제곱미터 일부간문이 기록되어 이를 2:1로 검토함.

1. 70.1.21 인가번호 67. 1. 21 (경오제11호)에 의해 화재예방책으로 기록된 사항에 따라 축척을 2:1로 변경하여 기록함.
2. 화재예방책에 따라 건축은 2층으로 설계되어 축척 2:1로 되어 있으나 도면상 화재계획도서에 기록이 1:25로 되어 있는 실정임.
3. 계획도서에 기록된 간문은 화재피해예방책에 의해 2:1로 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상 및 보습비가 2:1로 이상인 것임.

7. 결론

1. 계획도서에 기록된 2:1로 변경하여나 1:25로 기록된 사항에 대해 화재예방책으로 기록된 사항에 따라 2:1로 기록된 것임.

2011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11번지
 삼성생명빌딩 15층

0 취 리 방 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상이와 같은 원형으로 건축할수있어 환기우의용기할수있는 원형으로 구조적이며 최 소치에 원형을 도출하고 이어지는 단계를 수반에 방지하여 수반사항 이 원형을 가하여 갖.

취리방안 보고합니다.

1271. 4.

주심명 취방특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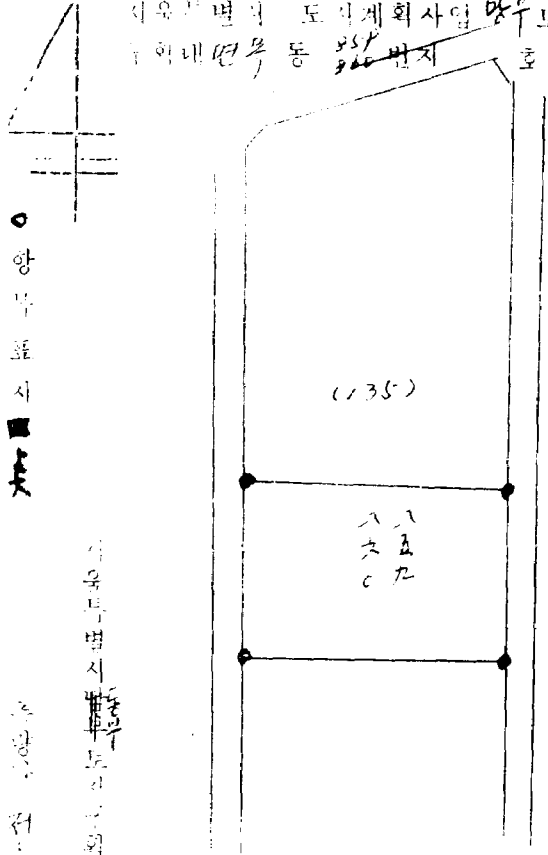
조 들 른

취방특별위원 취리

사

서도구 432,4

시유지별지 도 직계회사업 땅주 토지구획정리지구 135
수익내 편목 동 958번지 호 환사 지시 규량도



○ 양 부 토 지 ■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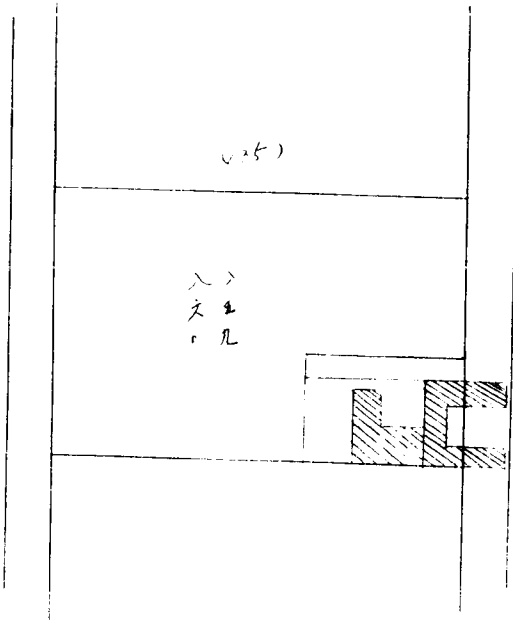
시유지별지 편목 동 958번지 호 환사 지시 규량도

○ 양 부 토 지 ■ 135

측량일자 시가一九七〇년 五 월 二 五 일
측적구 二 백 분 지 一

사용목적: 건축
상대 완료 일부 (완) (완료) 함
본 도면은 측량에 사용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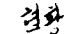
현황측량도



10



현
황
측
량
도


 現

 現
 況
 測
 量
 圖

변경전후 신고부내비표

변경전

변경후

장번호	화면번호	관리번호	김수	교부	장번호	화면번호	관리번호	김수	교부
870-3	407 ³⁰	406 ⁵⁰	0	00	870-3	407 ³⁰	406 ⁵⁰	0	00
861					861				
861-3	899 ⁶⁰	878	1	60	861-3	879 ⁶⁰	878	1	60
863					863				
866-5	547 ⁶⁰	547 ⁵⁰	0	10	866-5	547 ⁶⁰	546 ⁶⁰	1	-
750-6	499 ¹⁰	499 ¹⁰			750-6	499 ¹⁰	497 ⁵⁰	1	30
858					858				
858	658 ¹⁰	654 ¹⁰	4	10	858	658 ¹⁰	652 ¹⁰	6	-
869-3	382 ³⁰	382 ⁶⁰	1	70	869-3	382 ³⁰	382 ⁶⁰	1	70
859					859				
860	556 ⁷⁰	556 ⁷⁰			860	556 ⁷⁰	563 ¹⁰	2	10
750-7	276 ⁷⁰	276 ⁷⁰			750-7	276 ⁷⁰	276 ⁷⁰		
0-8	200-	200-			0-8	200-	200-		
11-9	251 ⁶⁰	250 ⁷⁰	0	90	11-9	251 ⁶⁰	250 ⁷⁰	0	80
854					854				
864	832 ²⁰	823 ²⁰	11	-	864	832 ²⁰	823 ²⁰	11	-
873-3	27 ⁵⁰	14 ⁸⁰	12	70	873-3	27 ⁵⁰	14 ⁸⁰	12	70
871					871				
872-3	1205 ⁸⁰	1205 ⁶⁰	0	20	872-3	1205 ⁸⁰	1205 ⁶⁰	0	20
875-3					875-3				
7238	7238 ⁵⁰	7205 ⁴⁰	37	10	7238	7238 ⁵⁰	7200 ⁸⁰	20	80
							7178		

(26)



				계 2 재	계 장	과 장	국 장
보 고 서							
1. 취재	방우 지우(부주)	1971. 1. 16	공화동	308-10			
2. 제목	화재 예방 계획 변경						
3. 요지	공화동 308-10호 상 건물보수사가 타인에게 화재가 되었음은 인정됨.						
4. 사업연혁	1. 인가 년월일 67. 1. 21 (전교제 11도) 2. 계획일 70. 1. 20 (4호) 3. 지령일 70. 11. 20 (" 24호) 4. 확정사항 여부 5. 관지처분 여부						
5. 현황	1. 공사 여부 공사미완료 2. 현 황 건물보수사 3. 보상 여부 공사 진행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6. 사건 전말	70. 11. 22 화재사건에 양부형으로 화재 원인을 밝힌 김도환씨 현황에 따라 화재 조사 추으로 타인에게 화재가 지경됨.						
7. 변경에 관한 문제점	변경에 따라 현행은 동의 하나 현행 지령받은 사람이 99가 지령이냐 현행이나 99가야 해서 지령이 가능함.						

100

8. 취 리 방 안	총차동 308-10호 아 인근 308-11호 아 전함어로 되어 교환 할지 변경코자함.
9. 소 모 관 관 관	전함어로 편지 개정하여 당시에 보낸비 전간과 정청인에 대하여 지적하여 민원인 원할은 기한수있음.

취리방이 보고함이다

1971.

4.
 지방토지관리
 2 3



시수류면사무소 귀라

101
 31-14

보 오 시

결 기장 추장
 하 [Stamp] [Signature]

1. 목적	방우자 (우자)	4구획	공회용 4구획	
2. 취지	복지계획 변경			
3. 주요 내용	감보환 (공회부관) 복지 집행 사항 사항			
4. 사업 예산	1. 예산 변경액	67. 1. 21 (전년 11호)		
	2. 계획 예산	70.		
	3. 집행 예산	70.		
	4. 집행 예산			
	5. 집행 예산			
5. 현황	1. 공사 여부	복지 미시용		
	2. 현황			
	3. 보충 여부			
6. 사업 전말	7. 1. 26 복지 소차주 주를근 으로 복지 감보환 집행금 요청하는 권정목 심하고 내용 검토한바 구획관리 사업법에 근거 매립공사를 함이 하명하나 복지 예산은 범위한 절차를 보므로 매립차므로 복지 계획시 누락하여 환지 지령림			
7. 예산 집행				
8. 취지 방안	구획관리 사업법에 근거 39호 현행 하자를 주하지 못하였으나 매립한것이 사실화 되므로 권(田)으로 감보환 적용한이 가하여 사르림.			

3/-15
 1992

소요
기간

조경사에 전령으로 구상적 계획을 주시어 당초부터
하는 등서 면원사항을 전같이 하신다 함.

기타
기타
보고
함이다.

197. 4.

지방도투기

조
릉
훈

나을
특별
사
장
기
하.

환지에정지변경(분할)조서

승 권 토 지		환 지 예 정 지				예 정 지				비 고	
동명	지 면 적	구 회 번 호	권 리 면 적	환 지 면 적	인 수	교 부	구 회 번 호	권 리 면 적	환 지 면 적		인 수
면적	258 전	279-1	135 654	135 658	10 19	19	135 652	135 658	19 6-		
계	279-		654- 658	10 19			652 658	19 6-			
면적	859 전	1085-1	135 556	135 556	20 20		135 563	135 556	20 20	20	
1	860	1	499-								
계	1084-		556 556	20 20			563 556	20 20	20 20		
면적	869 전	499-3	135 382	135 382	10 20	20	135 382	135 382	20 20	20	
1	860	1	499-								
계	499		382 384	20 20	20		382 384	20 20	20 20		
면적	870 전	1208-1	135 906	135 471	10 20	20	135 906	135 643	10 20	20	
1	860	1	499-								
계	1208-		906 907	20 20	20		906 907	20 20	20 20		
면적	750 전	645-136	499 499	10 10			136 493	499 499	10 5	20	
계	645-		499 499	10 10			493 499	10 5	20		
면적	273 전	21-	14 14	27 27	12 12		136 14	27 27	12 12		
계	21-		14 27	27 27	12 12		14 27	27 27	12 12		
면적	750 전	378-136	276 276	20 20			136 276	276 276	20 20		
1	257-		200 200				1	200 200			
1	322-		250 251	10 20			1	250 251	10 20		

104
31-17

환지예정지변경(분할)조서

중 전 도 지	지 면 적	구획번호	환 지 예 정 지	에 정 지	비 고
동명	지 면 적	구획번호	면적	면적	
			원리면적	환지면적	상수교부
계	957-		727 ⁴⁹	728 ³⁹ 99	
변경	861 전	176	877	375 ⁴⁹ 60	
	868 -3	175		504 ⁷²	
계	1152-		878 - 879 ⁶⁰	1 ⁶⁰	
변경	863 전	176	547 ⁵⁰	244 ⁵⁰ 0 ¹⁰	
	866 -3	175		703 ¹⁰	
계	754-		547 ¹⁰	547 ⁶⁰ 0 ¹⁰	
변경	895 전	176		109 ¹⁰	
	871 전	175	1205 ⁶⁰		
	872 -3	177		1096 ⁷⁰	
계	1717		1205 ⁶⁰	1205 ⁸⁰ 0 ⁷⁰	
변경	864 대	174	823 ¹⁰	259 ¹⁰ 11-	
	866 1	175		442 ¹⁰	
계	1160		823 ²⁰	826 ²⁰ 11-	

31-18
105
108

환지예정지변경(분활)조사

종 건 토 지				환 지 예 정 지											
동명	지 번	지 목	면 적	구 획 번호	변 경 전				구 변 경 후				비 고		
					관리면적	환지면적	징수	교부	관리면적	환지면적	징수	교부			

21-18
106

환지예정지변경(분할)조서

총 면 적		환 지 예 정 지				변 경 후 비 교			
동명	지번	구 획 면 적	민 정 전			구 획 면 적	변 경 후		
			관리면적	환지면적	징수교부		관리면적	환지면적	징수교부

환지에정지변경(분활)조사

중 전 보 지		원 지				에 정 지				비 고
동명	지번	면적	구획번호	면적	구획번호	면적	구획번호	면적	구획번호	
중화	308	548	08	380	20	20	08	363	64	
	-10		19		121	22	16		104	
			44		28	22	44		28	
			19				19			
계		548		380	20	380		363	363	—
중화	308	936	08		60		08		64	
	-11		19		270	60	19		270	
			44	521	50	67	44		67	
			19			20	19	538	20	
			44				44		28	
			16		123	—	16		78	
			16				16		28	
			19				19		121	
계		936		521	50	521		538	538	—
			44				44		197	
			44		197	44	44		197	
중화	414	439	44	471	—	244	44	416	20	244
	416		44				44	416	20	244
	-4	267	44			29	44		29	
			44				44		29	
			44				44		29	
			3				3		45	
계									45	
제비지 (7-7)		3		129	20	129		24	24	
계		706		600	20	600		600	600	

(135)

入 入 入	入 入 入 入 入 入 入 入 入	<p>(136)</p> <p>入 入 入 入 入 入 入 入 入</p>
-------------	---	---

(137)

入 入 入 入 入 入 入 入 入	<p>(138)</p> <p>入 入 入 入 入 入 入 入 入</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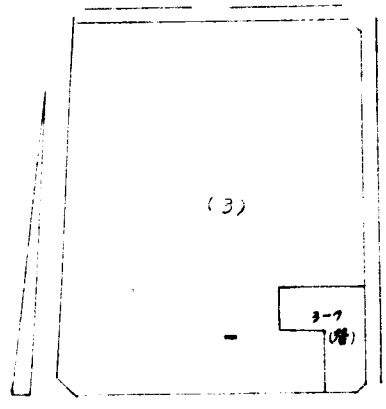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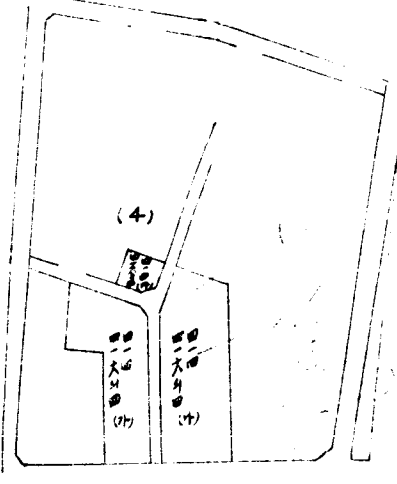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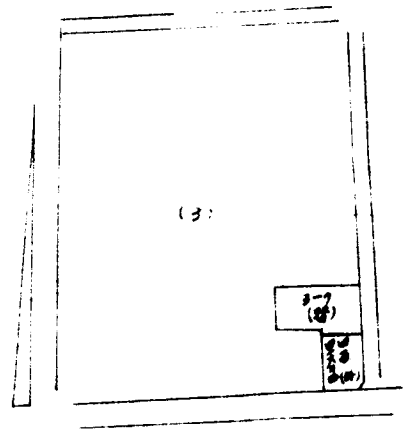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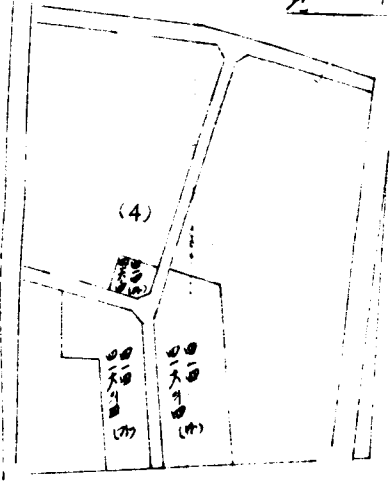
5-1
1200

新 井 井 新 井



62-3

新 井 井 新 井



역
촌
지
구

31-24
109

63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보 고 서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건 재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계 정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과 장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주 관 </div>
1. 회계	<div style="text-align: center;"> 역촌2공구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구획번호 188BL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종 음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지 번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717-34 </div>		
2. 제목	<div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환시 계약 변경</div>						
3. 요지	<div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교부변역 환시 지정요청</div>						
4. 사업 목적	<div style="font-size: 1.2em;"> 1. 인가번호인 67. 1. 21 (건2 8호) 2. 계약종교 70. 6. 21 (서울시공고제124호) 3. 지정공고 70. 10. 27 (" 213 ") 4. 확정측량여부 5. 환시처분 </div>						
5. 현 황	<div style="font-size: 1.2em;"> 1. 공사여부 공사 미완료 2. 현상 3. 보상여부 </div>						
6. 사 건 전 환 근	<div style="font-size: 1.2em;"> 1. 70. 12. 28 자소취하의 정원이 있어 검토하고 변경 공과 처리하겠음을 통보함. </div>						
7. 변 경 이 유 를 분 리 한 것 은	<div style="font-size: 1.2em;"> 1. 인접지 소유자의 환시 변경이 변경되나 침투면적을 증명하는 것으로 원상회 처지 취하는 사도함. </div>						
8. 처 리 방 안	<div style="font-size: 1.2em;"> 1. 인접지의 침투 면적에서 청원인의 교부변역이 해당하는 면적은 원상회 침착 환시지정 고지함. </div>						
9. 소 결 한 것 과 의 이 유	<div style="font-size: 1.2em;"> 1. 청원인의 이의신청을 처리하여 인선 재결을 하고자함. </div>						

109

		계	관	관	국
		관	관	관	관
보 고 서		계	관	관	관
1. 도청내	익훈 2공구	구획 번호	191BL	등번호	지번
				북가좌동	1247
2. 제목	관시 계획 변경				
3. 고지	부지 면적 시정요청				
4. 사업 연 계 구	1. 인가면 권 인 67. 1. 2 (건고제 8호) 2. 계획권 " 70. 6. 2 (서울시공고제 124호) 3. 지정공고 " 70. 10. 23 (" 23) 4. 확정투방 " " 5. 현시 처분 "				
5. 현 황	1. 공사 여부 : 미공사 2. 편향 : 부속 5층내 건물(공장)이 있음 3. 보상 여부 : 불필요				
6. 사 건 결 단 근	1. 기. 2. 5자 소유자로 부지 관시 면적 시정 요청이 있어 검토하여, 산정결과 면적 확인되어 관시 계획 변경 공고시 처리하겠음을 통보함.				
7. 불 이 판 결 이 유	1. 부지 면적한 용도 일부에서 체비지로 책정 하였으나, 인연선 자장이 없다고 사정함				
8. 처 리 방 안	1. 재 산정결과 257.3 평으로서 25.8평의 감수면적이 생하나 공적으로 인연선 자장이 없어, 부지 면적한 용도 일부는 4m 이하에 3m 이하로 변경하도록 산정하여 체비지로 책정 하고자 함.				
9. 소 요 과 목 및 비 율	1. 인연선 해설 하에 함				

보고서

계
재

계장
과장
주장

1. 회차: **백촌 2주** 구획번호: **209. 204BL** 증명: **북기좌측** 지번: **25-3, 25-1**

2. 제목: **항시 계획 변경**

3. 요지: **1. 현상대로 항시 지정 요청**

4. 사업 연혁

- 1. 민가 변형고 67. 1. 21 (건고 제 8호)
- 2. 계획승고 " 70. 6. 21 (서울시승고 제 124호)
- 3. 지정승고 " 70. 10. 27 (" 213 ")
- 4. 착공축방 "
- 5. 항시허보 "

5. 현 황

- 1. 공사 여부 : **미 공사**
- 2. 현상 : **건물 및 계사가 연하여 있음.**
- 3. 보상 여부 :

6. 사건 전 상황

1. 70. 11. 6 자소취사로 부위 현상대로 항시 요청이 있어 조사한 바 항시 지정된 항시 건물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항시 계획 변경시 처리 하것등을 통보함.

7. 변경 사유

1. 현상대로 항시계획은 조정할 여야나 부근 것사가 다른 변경되거나 인하여 차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8. 처리 방안

1. 도로 및 녹지에 저촉되지 않는 건물은 현지 항시 지정하고 부근 것사의 항시 계획 조정 하고려함.

9. 소결
1. 변형 해결 및 사업에 원상 기하고려함.

11P

승기와 같이 보고 합니다.

1971. 4

지방교육기원 무 김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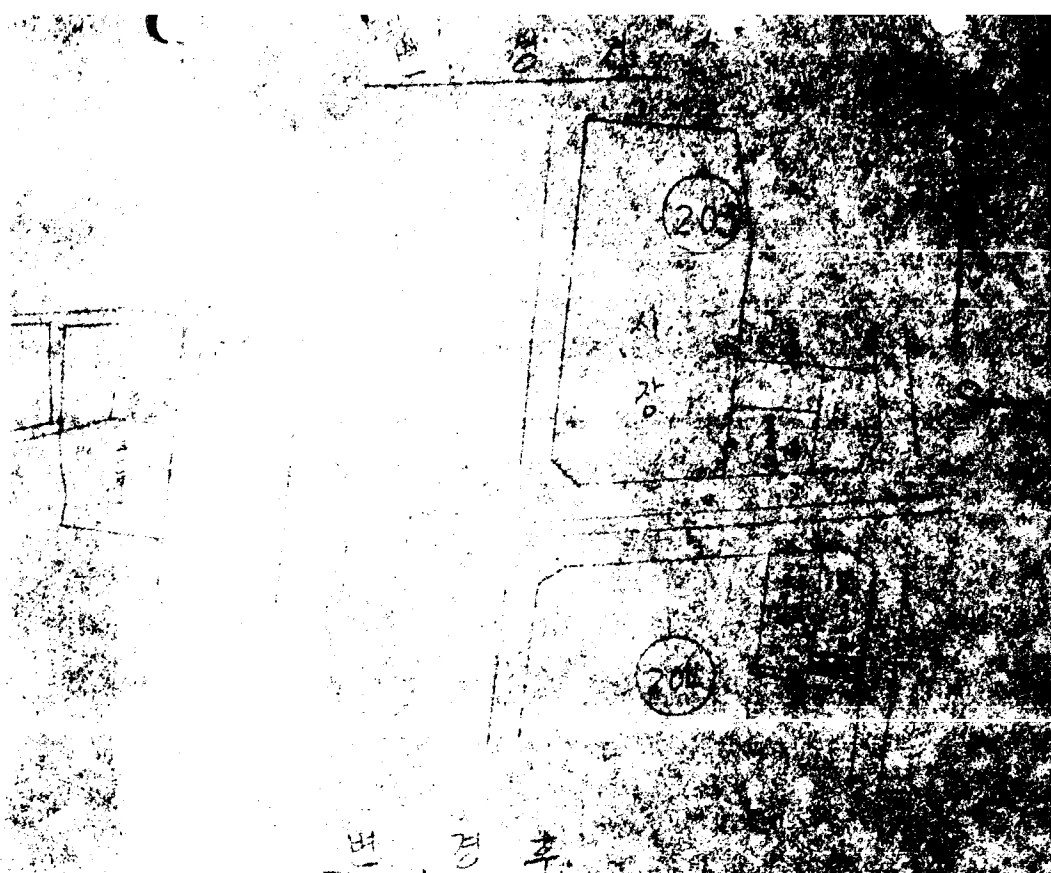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시장 귀하

113

31-6

환지 예정지 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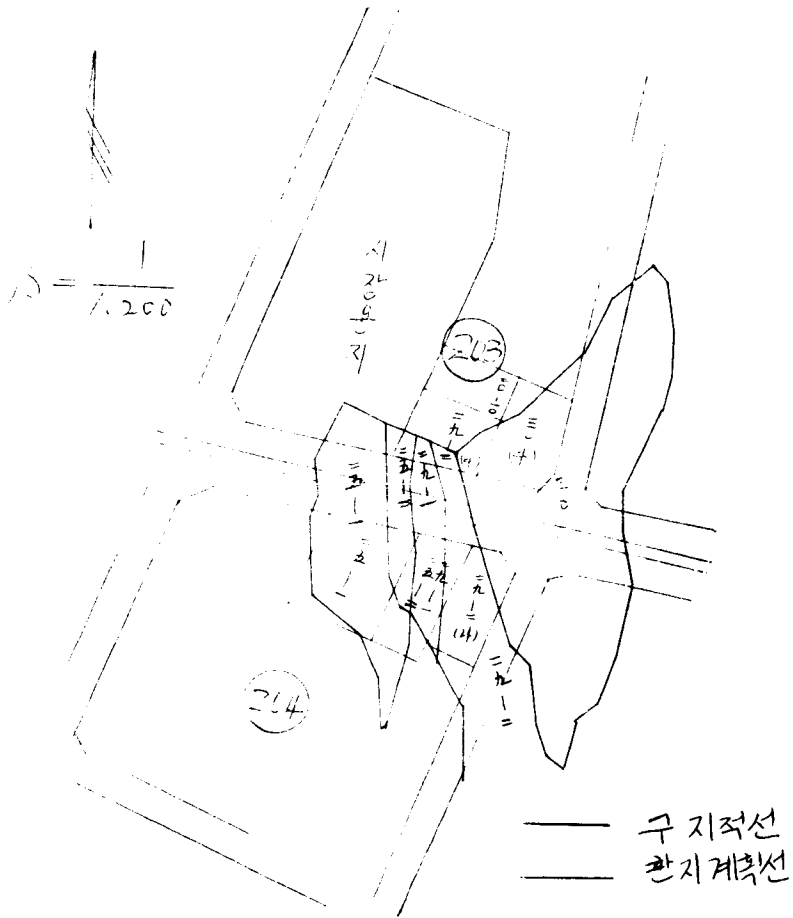
종 전 토 지				환 지 예 정 지				비 고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번 호	변 경 전 관리면적	변 경 후 관리면적	환 지면적														
문산 -2	317	대	5	188	31.8	28.8	188	31.8	31.8	교 3.-											
	-34		48																		
	계		53								31.8	28.8	31.8	31.8							
문산 -2	311	대	97	188	60	137.6	188	60	134.6	강 77.6 교 74.6											
	-1		(123)																		
부가좌	27	땅	344	(18) 201 (4) 204 (18) 203	51	51	201	51	51												
	계		177								177	177	177	200.7	200.7						
																25	204	92.2	92.2	30	
																-2	204	92.2	92.2	84.6	54.6
																29	204	92.2	92.2	84.6	84.6
계	130	92.2	92.2	84.6	84.6																
레비지	204	-1	204		12.8	204		18.7													



변경후



북기차등 29-1호 25-2호 구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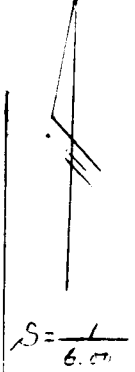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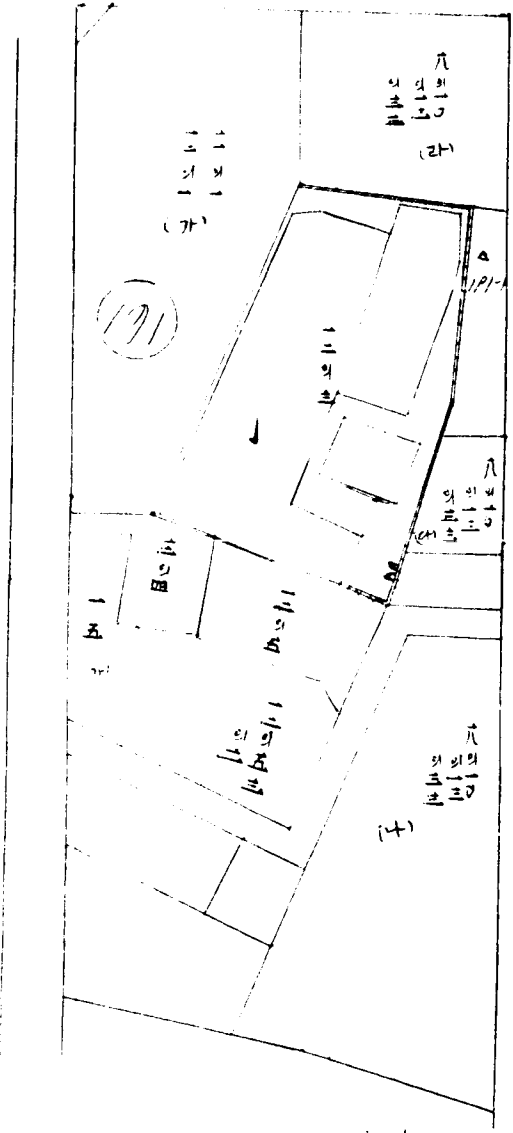
70

31-4
116

환지예정지변경(분할)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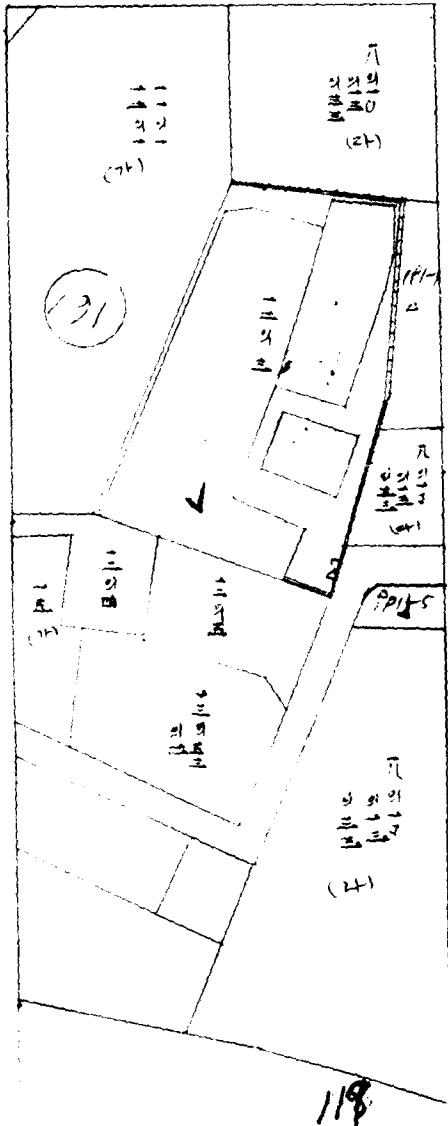
종	전	토	지	원				예				비	교			
				면	적	면	적	면	적	면	적					
동명	지	면	적	구	회	번호	권리	면	적	면	적	구	회	번호		
부	가	라	12 -3	생	243	199	1989	219	3	20.4	199	201	5	257	3	558
부	가	라	191 -5				신	설			"			10	5	

생



21-31
118

1991 7월 27일



72 73